

대구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나3177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남

담당변호사 최종혁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쌍희

변 론 종 결 2022. 1. 12.

판 결 선 고 2022. 2. 9.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2546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20. 2. 26.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11544호로써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허이훈, 판사 이지혜

별 지 목 록

1. 진주시 H 대 228㎡
2. 위 지상
 -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68.13㎡
 - 목조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23.79㎡
3. 진주시 I 임야 1,623㎡ 중
 - 공유자 C 지분 1,623분의 40 -끝-

